

○ **감사범위**

- 신규채용 분야: 2017. 10. 1.부터 2018. 10. 31.까지 채용업무 전반
- 정규직 전환 분야: 2014. 1. 1.부터 2018. 10. 31.까지 정규직 전환업무 전반

○ **감사기간** : 2018. 12. 24.~2018. 12. 28.

○ **감사단** : 행정감사팀장 등 5명

○ **감사중점 사항**

분 야	감사 중점
신규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청탁 · 부당지시 여부 -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적정 처리 여부 - 채용계획 수립, 공고, 서류 · 필기 · 면접 전형 등 절차별 운영실태 - 2018. 9. 5. 개정된 상위 지침의 개정내용 자체 규정에 반영 여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규직의 신규채용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 - 이미 채용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전환대상자 결정, 전환기구 구성 운영, 전환 채용시험 실시 등 전환과정 적정성 여부

○ **채용현황**

기관명	정 · 현원			신규채용 (2017.10.1.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2014. 1.1.이후)	
	정원	현원	정원 외	횟수	인원	횟수	인원
서귀포의료원	327	389	74	33	77	23	34

○ 서귀포의료원 지적사항

기관명	처분 요구서 번호	합계	신규채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채용 계획 수립	인사위원회		채용공고		서류 전형	필기시험 (인·적성 검사포함)	면접 시험	시험(평가)위원		합격자 결정	인사 규정	특별 채용	기타	전환 기준	전환 절차
				구성· 운영	심의· 의결	공고 내용	공고 기간				위원 구성	제척 회피 기피						
서귀포 의료원	24	2						1						1				
	25	5	1	1	1	1						1						
	36	3	1				1							1				

○ 지적사항 총괄

기관명	합계			징계 (인원)	주의				통보
	총 건수	신분상 조치 인원	재정상 조치 금액		계	기관 주의	관련자 주의 (인원)	훈계 경고 (인원)	
서귀포의료원	4				2	2			2

<요 약>

24 서귀포의료원 채용 관련 규정 불합리 (통보)

○ 서귀포의료원에서는 자체 규정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면서

-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자체 규정이 2014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된 상위 규정인 「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인사 지침」을 위배하여 불합리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정비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두고 있었음

▪ 「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인사 지침」에 위배되는 자체 규정 및 지침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 위배되는 규정(지침) : 공개채용 원칙의 예외사항, 신체조건·용모·연령제한, 면접심사위원회 미구성,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된 의사직 채용면접위원

- 서귀포의료원에서는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을 거쳐 직원을 채용하면서
- 직전 감사에서 인사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1/2 이상 포함하도록 자체 규정을 개정하라는 ‘통보’ 처분을 받아 개정하고도 6명의 인사위원회 위원에 외부 위원 1명을 추가하여 2명으로 늘렸을 뿐 1/2 이상 구성하지 않고 있고,
 - 2018년 1월 이후 19회에 걸쳐 수립한 직원 채용계획에 대하여 3회만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았을 뿐 12회는 서면심의를, 나머지 4회는 심의를 받지 않았으며,
 - 위 19회의 채용계획 중 13회는 면접시험 평가기준을 계획에 포함하거나 채용 공고문에도 공고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정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면접시험 평가위원이 응시자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등 이해 당사자 관계에 있는데도 제척·기피·회피 조치하지 않았음

- 인사위원회 위원에 1/2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직원채용에 관한 사항을 인사위원회 대면심의를 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며, 직원채용 공고 시 면접시험 평가기준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평가위원 중 응시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있을 경우 제척 또는 기피·회피 조치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

- 직원을 채용하면서
- 2018. 9. 5. 이후 직원 채용계획을 채용공고 예정일 10일 전까지 도에 통보하여 사전 검토를 하여야 하는데도 통보하지 않았고,
 - 직원 채용공고를 하면서 관련 규정에 정하여진 공고 기간보다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9일 적게 공고하였으며,

- 서류전형 평가위원을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하거나 면접시험 평가위원에 외부위원을 1/2 이상 참여시키지 않았고,
- 상위 지침인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등이 개정되었는데도 개정된 내용을 자체규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었음

- 직원채용 계획을 채용공고일 10일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사전 통보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
- 직원채용 공고 시 관련 규정에 정하여진 공고기간 동안 공고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
- 직원채용을 위한 서류전형(적격심사만 하는 경우 제외) 및 면접시험 평가위원을 구성하면서 외부전문가를 1/2 이상 포함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
- 임직원 채용,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한 자체 규정을 2018. 9. 5. 개정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등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 하도록 **통보**

○ 향후 계획

- 2019. 9. 2.까지 인사규정 및 채용업무 지침 등 개정을 통해 지적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음.